

TPP 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 분석*

Analysis of Regulatory Coherence in the TPP

양 준 석** Jun-sok Yang

목 차	
I. 서론	V. 규제일관성의 중요성
II.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VI. 한국의 규제개혁체제와 규제일관성
III. 기존 국제협정과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개혁	VII. 결론
IV. TPP 및 최근 FTA의 규제일관성 내용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FTA, 규제개혁, 규제일관성, 비관세장벽

* 본 연구는 201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경제학과 부교수

I. 서론

2015년 11월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TPP에서는 기존 FTA나 국제통상협정에 없었던 일부 내용이 등장하였는데, 이 중 하나는 regulatory coherence로, 국내 규제의 개선 및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1947년 GATT협정이 체결되고, 1995년 WTO가 설립되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FTA의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중진국 이상 수준의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상당히 제거되었고,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심한 비관세장벽도 상당부분 제거되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무역장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장벽은 전통적인 관세나 쿼터 같은 전통적인 무역제한 조치보다는 국내규제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내규제를 제거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많은 규제들은 정당한 국내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제거시키는 경우 국민의 반대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또 일부 규제는 국산품과 수입품, 순수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만 법적으로는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국제통상 체제에서 법적으로는 비차별적이지만 실제 영향이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들을 규제개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은 잘못 설계되었거나 집행되는 규제들, 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포획된 규제들로 인하여 국내 경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 연구들은 규제개혁을 할 때 피규제자들과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고, 규제 도입에 따르는 이득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규제대체방법으로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더 좋을 지를 검토하라는 규제투명성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존 규제를 검토하여 필요없는 규제는 제거하고, 수정해야 할 규제들은 과감하게 수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피규제자들이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규제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 외국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들으면 규제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OECD,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적절한 규제개혁을 시도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고, WTO의 TBT협정, SPS협정, 무역원활화협정과 정부조달협정에서는 규제개혁의 권장사항 중 규제투명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TPP는 regulatory coherence를 통하여 국제통상협정 중 처음으로 규제투명성 및 전반적인 규제개

혁의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간 협상 중인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서도 regulatory coherence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되고 있고, Fontagné and Jean(2014) 등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제일관성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을 크게 줄여 주어 TTIP에서 미국과 유럽의 이득을 가장 많이 키워주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¹⁾.

따라서 본 글은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regulatory coherence 규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글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검토로, 규제개혁 및 규제일관성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협상기록과 협정문 및 OECD와 APEC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들의 흐름을 살펴본 후, 이가 어떻게 TPP 협정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볼 때 비록 TPP에서 규제일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국제통상협정 차원에서는 처음 소개되었지만, 과거 논의 및 협상을 고려할 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으며, 한국은 regulatory coherence와 합치한 규제체제를 상당 부분 설립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아직 한국이 미흡한 부분도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regulatory coherence는 한국의 TPP나 향후 메가 FTA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일관성으로 번역할 것이다. 한국 정부 부처들의 공문이나 보조자료에는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규제수렴은 regulatory convergence를 의미하며, 이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regulatory coherence를 의미할 때에는 규제일관성으로 표현하고, 규제수렴은 regulatory convergence를 의미할 때만 사용한다. 또한, 정부도 regulatory coherence를 의미할 때에는 이를 규제일관성으로 번역하도록 권장한다.

아래에서 II장에는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및 영어번역 문제를 다룬 다음, III장에서는 기존 WTO 협정과 OECD와 APEC에서 규제일관성 및 규제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IV장에는 TPP협정에서의 규제일관성 챕터 내용을 살펴보고, TTIP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일관성 내용을 살펴본다. V장에서는 간단하게 규제일관성이 왜 국제통상협정에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VI장에서는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TPP 협정에서 요구하는 규제일관성 내용을 비교해본다.

1) Fontagné and Jean(2014)는 규제일관성으로 비관세장벽을 25% 제거하면 미국과 유럽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이 5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II.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이 글을 시작하기 전, regulatory convergence, regulatory coherence와 regulatory cooperation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TPP와 APEC의 규제개혁 및 TTIP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도자료에서는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기구 및 통상협정에서 협상 중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양 개념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정해야 하므로, 여기서 각 단어들의 정의를 정하기로 한다.

Regulatory convergence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규제를 하나 또는 소수의 규제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의미하고, 대다수 국제 통상협정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regulatory convergence는 규제수렴이라고 번역한다.

Regulatory cooperation은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가들의 규제담당부처,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담당하는 다양한 국내부처간의 협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협력은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규제수렴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regulatory cooperation을 규제협력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TTIP 관련 자료에 의하면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은 “규제당국들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및 규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강화로부터의 이득을 기초로 하는 미국과 유럽(또는 상대국)의 규제당국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의미한다²⁾.

Regulatory coherence에 대하여 합의한 정의는 아직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regulatory coherence는 국제적 협력보다는 규제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적 제도개선과 국내외 기관들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조치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TPP 협정 25.2조 1항에서는 regulatory coherence를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고, 국내정책목표의 실현, 국제무역과 투자의 장려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간 규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³⁾”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의 TTIP 관련 자료에서는 regulatory coherence를 “국내적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참

2) “Regulatory cooperation is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US and EU regulators, founded in the benefits regulators can achieve through clear partnership and greater regulatory interoperability”, US Chamber of Commerce(2015), p.2.

3) “[R]egulatory coherence refers to the use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the process of planning, designing, issu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regulatory measures in order to facilitate achievement of domestic policy objectives, and in efforts across governments to enhance regulatory cooperation in order to further those objectives an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여 및 좋은 규제 관례를 만들기⁴⁾”로 언급하고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규제수렴을 regulatory coherence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지만 직접적인 목표로는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자료에서는 규제협력과 regulatory coherence 관련 규정이 특정한 규제적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 따라서 논리적으로 regulatory coherence와 regulatory convergence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글에서는 regulatory coherence가 규제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및 심사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규제일관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⁶⁾.

또한, 이 글에서는 규제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2002)에 의하면 규제투명성은 “피규제자들이 그들의 법적의무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역량⁷⁾”으로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들이 정부가 결정할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의 투명성을 넘어서 법령이나 규제의 설립단계로부터 피규제자들이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고려하는 절차적 투명성을 포함한다⁸⁾.

III. 기존 국제협정과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개혁

1. OECD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OECD로, OECD는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 및 규제의 효율성 개선을 통하여 국내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자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 계획과 각종 정책도구를 1990년대 중반부터 발표하였다. OECD의 각종 원칙과 권장사항을 보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개방보다는 국내 경제체제의 개선을 통한 성장률 증가나 국내 후생수준의 향상으로 보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경쟁을 원활화시키는 것이 큰 도움

4) “Regulatory coherence is about good regulatory practices, transparency and stakeholder engagement in a domestic regulatory process.” US Chamber of Commerce(2015), p.1.

5) “Horizontal regulatory coherence and regulatory cooperation provisions in the TTIP cannot and should not dictate or guarantee specific regulatory outcomes.” US Chamber of Commerce(2015), p.18.

6) 정부는 각종 보도자료에서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고, 일부 여타 자료에서는 규제조화 또는 규제통합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중 규제조화도 국내규제들의 효율제고를 위한 조화라는 뜻으로 사용되면 regulatory coherence의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규제조화와 규제통합은 규제수렴의 개념과 너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규제일관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7) OECD(2001), pp.84-85.

8) OECD(2001), p.85.

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시장개방 및 경쟁도모 역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1997년 발행된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⁹⁾과 2001년에 발행된 “Flagship Report on Regulatory Quality”¹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1997년 보고서에서는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OECD의 공공관리위원회(PUMA)가 규제개혁의 전반적 원칙과 절차, 그리고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였고, 추가로 OECD의 경쟁정책위원회는 규제개혁에서 경쟁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소개하였으며, OECD의 무역위원회는 규제개혁에서 시장개방을 도울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소개하였다. <표 1>에서는 OECD(1997b)의 1장, 2장과 7장에서 공공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규제개혁의 전반적 원칙과 권장사항, 그리고 OECD 무역위원회가 권장한 시장개방 규제개혁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공공관리위원회는 규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규제품질과 규제관련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규제관리 여력을 키우라고 권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 및 기존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과 규제대체 정책수단의 사용을 권장하고, 정부기관들간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시장개방 차원에서 OECD(1997)과 OECD(2001)는 투명성 제고와 결정절차의 공개, 비차별성 원칙의 적용,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제거, 국제기준 사용, 다른 국가들의 기준 및 표준의 인정, 국제적 관점에서 경쟁정책 적용 등 6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투명성 제고와 결정절차의 공개란 “외국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새로운 규제나 개정된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법안이나 규제를 확정하기 전 이해관계자들과 규제당국간의 사전상의(prior consul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1997, Chapter 5; OECD, 2001, 3). 여기서 사전상의란 법이나 규제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법안이나 규제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전달하고 규제당국은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하는 단계를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시된 개념들은 APEC-OECD 규제개혁 협력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그 내용은 TPP의 규제일관성 부문에 반영되고 있다.

9) OECD(1997a), OECD(1997b).

10) OECD(2001).

〈표 1〉 규제개혁 OECD 권장사항

분야 (담당부서, 국)	주요권장사항	부수권장사항
높은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제고 (OECD PUMA)	규제운영시스템 구축	최고 정치계층으로부터 규제개혁을 목표로 삼도록 할 것
		규제의 결정과 관련 규제의 품질과 원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
		규제운영 역량을 설립할 것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 향상	규제영향분석을 사용할 것
		규제의 영향을 받을 이해단체들과 체계적인 공공협의체를 실시할 것
		규제대체수단을 사용할 것 규제에 대한 협력을 향상할 것
기존규제의 품질 향상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추가로 다음 전략을 사용할 것)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할 것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red tape) 및 형식적 요구사항(formalities)을 줄일 것	
시장개방의 향상 (OECD 무역이사회)	결정절차의 투명성과 개방성 제고	
	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제한적 요소를 회피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 및 조치의 사용	
	다른 국가들 규제조치의 동등성 인정 시장개방 차원에서 경쟁정책 원칙을 활용	

자료: OECD (1997b) 1, 2, 5장.

2. WTO

규제일관성에 있어서 규제투명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WTO/UR협정 중 일부 협정은 이미 규제투명성의 개념을 상당수 도입하였다.

WTO 차원에서 투명성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정은 GATT X조이다. GATT X조 1항에는 관세, 세금이나 관세분류, 수출입과 관련된 요구, 제한 또는 금지사항, 대금지불, 수출입품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창고업, 검열, 처리, 혼합 등에 관련된 법령, 규제 및 관정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역을 할 때 필수적인 기본조건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무만 부여하고, 이의 집행, 수능 및 피규제자의 편의나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정보투명성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조항에서는 회원국 정부에게 공표의 의무를 부여하지만, 그 이상으로 피규제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없다.

GATT X조2항과 3항은 가장 기본적인 규제투명성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법이나 규제를 공표하기 이전에 발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협상라운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면서 국내규제가 관세 못지않은 무역장벽이 되었다는 회원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TBT협정과 SPS협정, 복수간 정부조달협정(GPA)과 통관절차를 다루고 있는 무역원활화협정(TF) 등 일부 UR 협정 및 도하라운드의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GATT에서 정한 투명성 원칙을 확장시켰고, 여기에 규제투명성의 요소를 더욱 많이 포함시켰다.

기존 WTO 협정에서 규제투명성과 관련된 조치는 TBT와 SPS, GPA와 TF협정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양준석(2006)에서는 TF협정을 제외한 TBT, SPS와 GPA 협정들에 포함된 각종 규제투명성 조치를 검토하였는데, <표 2>에서는 이 협정들에서 나오는 주요 규제투명성 조치를 정리하고 있다.

정보접근 차원에서 이 협정들은 GATT X조와 같이 기본적으로 협정의 내용과 관련된 법과 규제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이전 법이나 규제, 표준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TBT, GPA와 TF협정에서는 법과 규제를 공표할 때 사용하는 매체를 WTO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는 WTO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매체들을 공개하고 있다. TBT, SPS, TF협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각 협정에서 다루는 법이나 규제, 또는 기술적 기준이나 표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을 제출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정보창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T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다음 6개월간의 개정계획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A협정에서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급업체들의 질문을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상의와 준비기간 차원에서 TBT와 SPS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 TF협정에서는 통관절차에 대한 새로운 법이나 규제의 논의단계에서 그 안을 공표하고, 여타 회원국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TBT협정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받는 경우, 표준이나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은 코멘트를 고려하고 여기에 대한 답장을 코멘트 제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T와 SPS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이러한 코멘트를 접수하고 응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F협정에서는 정보창구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T, SPS와 TF 협정에서는 기술적 기준이나 표준, 통관관련 법이나 규제안이 의회나 담당 규제기관을 통과한다면, 이 기준, 표준, 법이나 규제의 공포와 발효 사이 피규제자들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ATT X:3조나 GPA협정, TF협정에서는 담당기관이 통관이나 정부조달 절차에 있어서 법이나 규정, 협정의 조건을 어기는 경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상소절차나 상소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WTO 협정의 규제투명성 조치

주요분류	의무사항	WTO 협정 및 조항
정보의 접근	주요 법령과 규제 (또는 승인된 기술적 기준과 표준)의 출판의무	GATT Art. X:1 TBT 2.11 TBT Annex 3:O SPS Annex B:1 GPA Art. VI,1-2 TF Art. 1.1
	법령, 규제, 기술기준 및 표준 등과 관련된 조치가 발효되기 전 출판해야 하는 의무	GATT Art. X:2 TBT Art. 2.9 TBT Art. 5.6 (적합성의 경우) SPS Annex B:2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출판하는 매체를 정하고, 이 매체를 WTO에 등록하는 의무	TBT Art.2.9.2 GPA Art. VI,3 TF Art. 1.4
	현재 고려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제안, 기술기준 및 표준안을 최종 승인 단계 이전에 출판할 의무	TBT Annex 3:J SPS Annex B:5
	정보를 접근하고 구할 수 있는 부처를 지정하거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정보창구, 또는 단일정보창구를 설립해야 할 의무	TBT Art.10.1 SPS Art B:3 TF Art. 1.3
	미래 법령, 규제, 기술기준 등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을 공표해야 할 의무	TBT Annex 3:J
공공협의를 의무와 준비기간 부여	새로 도입하고자 논의하는 법령, 규제, 기술기준과 표준과 관련, 영향을 받는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나 절차를 마련할 의무	TBT Annex 3:L TBT Annex B:5 TF Art. 2
	정부가 견해를 수용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TBT Annex 3:M
	공공협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	TBT Art 10.1 SPS Annex B:10
	법이나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공포와 발효간 충분한 준비시간을 정하고 부여할 의무	TBT Art. 2.9 TBT Art. 5.6 (적합성) SPS Annex B:2
항의, 상소 절차	불만이나 상소항의를 받도록 부처를 지정하거나 명확한 절차를 설립해야 할 의무	GATT Art. X:3(b) GPA Art. XVIII TF Art. 4

자료 : TBT, SPS, GPA 협정, GATT (1947), 무역원활화협정, 양준석(2006).

보다시피 TBT, SPS, GPA 및 TF협정 등 일부 WTO/UR 협정의 규정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의무를 넘어서 규정을 설립할 때 규정이 적합한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시켰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코멘트를 고려하고, 새로운 법이나 규정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항의할 수 있는 규제투명성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코멘트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이거나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법이나 규제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고, 준비기간을 주어 법이나 규제 및 기준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상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협정의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APEC

APEC은 시초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의 무역과 투자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개방 뿐만이 아니라 국내경제의 효율성과 회원국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기구로 발전되었다. APEC은 협정을 통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기구라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협력을 위주로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기구로 설립되었으므로 APEC은 OECD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책분야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APEC은 초기부터 규제개혁 등의 조치를 통한 비관세장벽의 제거나 완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2000년부터는 OECD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¹¹⁾.

그 결과로 APEC과 OECD는 2005년 APEC-OECD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 체크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발표하였는데,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전반적 사항, 규제정책 관련사항, 경쟁정책 관련사항 및 시장개방 관련사항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적 사항, 규제정책 관련사항과 시장개방에 관련된 체크리스트 사항을 <Table 3>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APEC에서 규제개혁을 논의할 때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규제개혁과 관련 APEC 회원국들은 ▲ 국내 통상, 표준 및 규제기관간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는 국내절차를 도입하고, ▲ 기존 또는 도입가능한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개발 또는 강화하도록 하며, ▲ 2005년 체크리스트의 조건에 합치하는 투명성 요구사항을 실현하도록 정상회의 차원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¹²⁾. 정상선언문의 세부사항을 본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국내절차를 도입한다는 부문에서는 범국가적 규제개혁 계획과 규제의 원칙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기존 규제를

11) Bollyky(2012) pp.11-12.

12) APEC(2011) Appendix D, Bollyky(2012) p.12.

검토하여 부당한 부담을 제거하겠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고; 규제를 평가하고 규제 대체 방법을 검토하다는 부문에서는 각 회원국이 규제제안에서 규제가 다루는 문제와 그 중요성을 기술하고, 부담이 더 적은 규제의 대체방법을 고려하겠다는 원칙, 규제 및 규제 대체방법의 비용과 이득을 검토하겠다는 원칙, 그리고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시킬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혁 체크리스트에 합치하는 투명성 요구사항을 실현하겠다는 부문에서는 제안된 규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원칙, 규제안을 명확하고 읽기 쉽게 작성하며, 피규제자들이 규제안을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원칙, 그리고 규제기관들이 이러한 코멘트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APEC-OECD의 체크리스트를 평가한다면, 규제개혁에 있어서 정부내외적, 국내외적, 정치적 및 행정적 지원을 확인하고, 새로운 규제 및 기존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효율성을 제고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고, 규제가 도입된 후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제투명성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이해관계자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개발 및 집행과정에서 시장개방과 비차별성 및 경쟁정책의 원칙을 고려하는 지를 확인하고 있고, 기술 및 표준 규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규제수렴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기술규제 및 표준과 관련, 상호인정을 고려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국내규제가 외국 또는 국제기준과 꼭 같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오직 국내규제가 불필요한 무역이나 투자장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라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물론, 각 질문의 세부설명에 들어가면 규제수렴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원칙에서는 규제수렴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루고 있지만, 규제수렴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지는 않다.

보다시피 OECD와 APEC은 규제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되, 필요한 규제의 실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형성하고, 필요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대체적인 정책도구를 사용하게 하며, 규제의 의무사항을 파악하며, 이를 대비하고, 필요시 항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이 OECD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WTO/UR 협정에서 특히 TBT와 SPS협정 및 TF협정은 OECD의 규제투명성 및 규제개혁 개념을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APEC-OECD 규제개혁 종합적 체크리스트

조치	번호	체크리스트 확인 질문
수평적조치	A1	규제, 경쟁 및 시장개방 정책을 다루는 원칙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A2	경쟁과 시장개방의 제고를 포함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치적 지도자들과 고위관료층은 국민과 관료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규제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가? 이러한 지지가 어떻게 실제 조치로 표시되며, 기업, 소비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와 개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A3	규제, 경쟁 및 시장개방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보장하는 책임절차가 있는가?
	A4	유사한 국산 또는 수입 상품이나 서비스,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 규제, 경쟁정책이나 시장개방 정책은 얼마나 차별성을 회피하는가? 차별성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가?
	A5	규제개혁(규제품질, 경쟁정책 및 시장개방 정책 포함)이 모든 차원(중앙, 지방, 국제 등)의 정부기관들간 잘 조정되고 장려되고 있는가?
	A6	정책, 법, 규제, 관례, 절차 및 의사결정절차는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정부내의 및 국내외의 관계자들이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 이 절차들의 효율성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A7	규제개혁, 적합한 규제기관의 설립 및 경쟁의 소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A8	규제개혁을 운영하고 조정하며, 규제개혁과 경쟁 및 시장개방 유의사항을 규제운영체제에 반영하는 효과적인 부처간 절차가 있는가?
	A9	규제품질, 외국기업들에 대한 시장개방 및 경쟁정책 담당부처들에게 그들의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이 지원되고 있는가?
	A10	규제형성자와 규제담당자들이 높은 규제품질 기준을 습득하고, 경쟁 및 시장개방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및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가?
	A11	국내 법령체제는 개인의 적법절차 및 법이 주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있는 고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가? 특히 상소체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규제정책	B1	규제 품질제고 원칙의 일관적 및 효과적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가?
	B2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할 때 법적기준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가? 새로운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적 성과지표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가?
	B3	기존 규제의 법적기준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성과지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B4	규율, 규제제도 및 규제운영절차가 정부내의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하며 예측가능한가?
	B5	효과적인 공공협의 절차가 있는가? 여기에 피규제자들과 기타 이해관계자, 비정부단체 및 민간분야, 자문단체, 인증기관, 기술기준 개발기관 및 여타 정부에게 공개되는 사전 통보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B6	새로운 규제의 개발, 또는 기존 규제의 검토 중 규제의 영향을 분석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과 기준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B7	규제대체수단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B8	규제의 집행과 순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시장개방 정책	D1	규제결정절차 내에 무역과 국제투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D2	규제와 규제의 집행과 관련, 무역에 호의적이고 경제주체들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D3	일관성, 예측가능성, 단순성 및 투명성을 통하여 상품의 흐름을 원활화하게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도록 통관 및 국경절차를 디자인하고 집행하고 있는가? 서비스공급자들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 양허한 시장접근의 보장하도록 절차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D4	정부는 사전통보를 포함한 효과적인 공공협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또한 외국 이해관련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련자들이 여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가?
	D5	정부조달 절차는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에게 투명하고 개방되어 있는가?
	D6	규제의 요구사항이 외국인투자나 외국인의 소유권, 또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차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가?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데에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
	D7	국내 주요 및 부수 규제의 기초로 얼마나 조화된 국제기준을 활용하고 있는가?
	D8	해외에서 집행되고 있는 조치와 국내조치의 동등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D9	적합성 절차와 관련, 절차의 개발과정이 투명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용가능하고 불필요한 무역장애가 없이 집행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자료 : APEC-OECD (2005).

IV. TPP 및 최근 FTA의 규제일관성 내용

1. TPP

규제일관성은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되는 기존 통상협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협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앞에서 논의한 OECD / WTO / APEC 과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Bullyky(2012)에 의하면 TPP협상에서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가 규제일관성을 지지하였으며, 미국은 규제일관성을 중소기업의 시장을 열어주고, 식품안전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

2015년 11월에 발표한 TPP 협정에서 규제일관성을 다루는 25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25.1조는 정의부문으로 규제조치(regulatory measure)란 “협정에 적용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규제기관이 채택하고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조

13) Bullyky(2012) pp.1-2.

치”를 의미하며, 적용대상규제조치(covered regulatory measure)는 25.3조에 따라 각 가입국이 TPP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한 규제조치를 의미한다.

25.2조는 25장의 일반규정을 제시하는데, 1항에서는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을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고, 국내정책목표의 실현, 국제무역과 투자의 장려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간 규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5.2조의 2항은 규제일관성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회원국이 규제일관성을 통하여 가입국간 국제무역과 투자 및 투자의 증가를 원활화하게 하여 TPP협정의 이익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하며(2.a항); 각 가입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규제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조치를 설립하고 집행할 주권을 유지하며(2.b항); 공공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규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2.c항); 규제조치의 개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2.d항); 가입국간 규제협력 및 능력배양이 중요하다(2.e항)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3항에서는 협정의 적용대상인 규제조치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3항에 따르면 각 가입국은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규제조치의 범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가입국은 적용대상 범위의 규제조치가 실의미가 있는 범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4조와 5조가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4조에서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5조에서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원칙들을 나열하고 있다.

4조는 규제의 조정 및 심의 절차와 도구를 다루고 있는데, 4조의 1항에서는 각 가입국은 규제조치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국내기관간의 상의를 주도하고 각 기관의 입장들을 조화하는 국내도구가 규제일관성을 원활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각 가입국은 적용대상인 규제조치에 대해서 이러한 도구나 절차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이러한 절차나 도구가 가입국의 상황, 특히 경제개발 수준이나 정치적·제도적 구조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규제조정 및 심의 절차나 도구는 다음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대상규제조치를 검토하고, 규제조치의 개발이 좋은 규제의 원칙을 따르는지 검토하고 이에 따라 권장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여기서 좋은 규제의 원칙

- 은 25.5조에서 제시하는 좋은 규제 핵심 관례의 원칙을 포함할 수 있음. (2a항)
- 국내 정부기관들간 상의 및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규제와 관련 겹치거나 중복되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을 밝히고, 기관들간 비일관적인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을 예방하도록 함. (2b항)
- 규제의 향상에 관하여 체계적인 권장을 할 수 있어야 함. (2c항)
- 검토를 한 규제조치, 체계적 규제향상계획, 그리고 규제조화 및 검토기관이나 절차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갱신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2d항)

또한 가입국 정부는 이러한 기관이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제작하도록 한다.

25.5조는 좋은 규제 핵심 관례(Core Good Regulatory Practices)의 집행을 다루고 있고, 규제를 심사하거나 개혁할 때 따르도록 권장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열되는 원칙들은 앞에서 언급된 OECD, WTO 및 APEC의 규제개혁 권장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1항에서는 각 가입국이 자국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기관들에게 협정의 적용대상규제조치 중 일정한 경제적 또는 규제 영향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규제조치에 대해서 자국의 법과 규제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규제영향분석(RIA)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RIA는 다양한 범위의 발생 가능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25.5조 2항에서는 각 가입국간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및 개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규제영향분석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제제안이 필요한지의 여부의 평가 - 여기에는 규제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기술해야 함. (2a항)
- 규제 외 실행가능하며 기존 법과 규제에 합치하는 규제대체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체방법의 비용과 이득, 위험성, 분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단, 일부 비용이나 이득은 수량적 또는 화폐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함 (2b항)
- 선택한 규제대체 방법이 사회적 목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함.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방법의 비용과 이득,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참조하도록 함. (2c항)
-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좋은 정보에 근거를 두도록 함. 여기에는 특정 규제기관의 권력, 책임 및 한계에 적절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기타 정보가 포함됨.

2항의 내용 중 2a항과 2b항의 내용은 2011년 APEC 정상회의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항에서는 RIA를 진행할 때 규제가 중소기업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은 적용대상규제조치를 읽기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정리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일부 조치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5항에서는 각 가입국의 법과 규제의 범위 안에서 가입국은 규제기관들이 새로운 적용대상규제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항에서는 각 가입국이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적용대상규제조치를 검토하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내 정책목표를 실현하도록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규제조치들을 개선하거나 간소화할 지, 확대 또는 제거할 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7항에서는 매년 각 가입국은 자국 판단에 적절하고 법과 규제에 합치한 방법을 통하여 향후 12개월동안 자국 규제기관들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적용대상규제조치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항은 규제수립에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입국들은 자국의 규제기관들이 적용대상규제조치를 계획할 때 기존 법의 범위 내에서 여타 가입국들의 규제를 고려하고, 국제 또는 지역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6조는 가입국들간 TPP 산하에 규제일관성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25.7조는 규제협력을 다루고 있는데, 1항에 의하면 가입국들은 협정의 집행을 원활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이러한 협력에는 여타 가입국과의 정보교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자국이나 가입국의 이해관계자, 교육활동이나 세미나, 규제기관들과의 협력활동 강화, 또는 가입국들이 합의한 기타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가입국간의 규제협력, 특히 각 가입국의 규제조치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5.8조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규제일관성위원회는 규제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각종 투입물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10조와 11조는 규제일관성 챕터와 TPP의 다른 챕터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10조에서는 규제일관성 챕터의 내용과 TPP 여타 챕터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여타 챕터의 내용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11조에서는 규제일관성 25장의 내용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일관성 챕터인 25장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집행력이 있는 규정들이라기보다는 권장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년 TPP 협상 중 규제일관성 협정 중간본이 누출된 바가 있다. TPP 협정 규제일관성 최종본과 2010년에 누출된 중간본을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보인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다. 2010년 중간본에서는 가입국이 전국차원으로 규제를 조절하는 기관을 설립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 최종본에서는 규제일관성과 관련된 내용은 분쟁해결절차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간본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오직 사항은 규제조절기관 설립의 유무이었다.

또한 좋은 규제 원칙 부분에서 중간본은 RIA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조건을 요구하였다. 중간본에서는 RIA가 규제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규제 또는 선정된 정책수단이 사회적 순이익을 가장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중간본에서는 RIA에서 다음 요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비규제적 또는 자발적인 조치로 정책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려
- 국내법과 합치한 범위내에서 규제 등 각 정책수단의 이익과 비용을 평가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도 평가할 것

최종본에는 RIA에서 규제대체수단을 고려하라고만 규정하였으며, 꼭 검토하고 구체적인 손익분석을 하라는 항목들은 제거되었으므로 RIA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중간본에서 최종본 사이에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보다시피 TPP의 규제일관성 내용은 기존 APEC-OECD에서 논의된 원칙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문구는 APEC-OECD 권장사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정책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와 기존 규제의 검토를 하는 하나의 중앙기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규제의 편익과 대체방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RIA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즉, 하나의 중앙기관이 국가내 모든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부처간 규제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하며, RIA로 이러한 과정을 객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문서화시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이 너무 높은, 또는 차별적인 요소가 너무 강한 규제는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남은 규제들은 꼭 필요한 규제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를 검토할 때 규제관련 좋은 관행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규제투명성 원칙이 많이 도입되어 있다.

2. TTIP

미국과 유럽연합(EU)가 협상하고 있는 TTIP에서도 규제일관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TTIP의 규제일관성 협정안이나 협정 중간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상공회의소나 EU는 자기들의 입장을 표시하는 공식자료를 발표하였다. 여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TPP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한다.

먼저, 미국 상공회의소는 규제일관성을 “국내적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좋은 규제 관례를 만들기”로 정의하고 있다¹⁴⁾. EU는 규제일관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지만, 미국 상공회의소의 정의를 부인하는 요소는 없다. 두 자료에서 모두 국가는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규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주권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일관성은 국내차원에서 더욱 좋은 규제를 만드는 절차이며, 여기에는 시장개방, 규제협력과 규제수렴의 가능성 및 미국과 EU의 규제 동등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가 규제일관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공식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내용은 1) 규제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의 강화, 2) 상호인정과 국제기준 사용의 장려 등 규제호환성의 강화, 3) 고려되고 있는 규제안의 공표, 4) RIA 및 규제의 편익분석 강조, 5) 규제 관련 상호 대화의 강화 6) 기존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보창구의 설립, 7) 규제협력위원회 설립 등이 있다¹⁵⁾. 유럽측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특히 TBT, SPS와 통관절차에 관련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는 정보의 접근 및 규제투명성 제고, 사전상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발표, 규제의 편익분석과 규제대체수단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의 의무화, 과학적 기준과 리스크 분석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 분석 및 집행, 사후 분석(즉, 기존 규제의 검토), 규제 및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 그리고 규제협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TTIP에서 등장할 규제일관성 내용도 TPP의 규제일관성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일관성은 좋은 규제개혁 원칙과 절차, 제도와 기관의 도입을 권장하며 규제개혁에 외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규제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4) US Chamber of Commerce(2012) p.1.

15) European Union(2007) 참조.

V. 규제일관성의 중요성

규제일관성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조치들이 국내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결과이다¹⁶⁾. OECD(2000)과 OECD(2007)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이 한국경제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내 정책과제인데, 이를 WTO나 FTA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94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장개방의 노력으로 각 국가의 관세장벽이 제거되면서 규제를 포함한 비관세장벽이 관세나 쿼터보다 더욱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였으므로 규제로 인한 무역과 국제투자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TTIP의 경우, Fontagné and Jean(2014)에 의하면 TTIP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규제일관성 조치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25% 제거하는 경우, 유럽의 대미 수출은 현재 수준에서 52.5% 증가하고, 미국의 대EC 무역은 49%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역증가의 80%, 실질소득의 90%는 규제일관성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제거나 완화로부터 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통상협상을 통하여 제거하기는 불가피한 과제가 된 셈이다. 규제일관성은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제일관성은 기존 국제통상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국제통상협정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무역의 경우 국산품이나 수입품, 그리고 투자의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협정을 통하여 뚜렷하게 차별적인 법이나 규제는 제거할 수 있고, 현재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법이나 규제는 많이 제거되었다. 그런바, 현재 가장 흔한 무역장벽이나 투자장벽 중 하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규제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이나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불리한 규제이지만, 유용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국산품이나 국내기업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규제라면 외적으로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제협정 차원에서는 다루기가 어렵다. 소수의 특정 문제들은 FTA의 협상단계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법과 규제를 협상에서 다룰 수는 없다.

16) OECD(1997) pp.1-22.

17) 그러나 어떻게 규제개혁을 통해서 비관세장벽을 제거시킬 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취약한 면이 있다.

규제일관성을 통하여 규제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규제투명성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검토할 때 수입품이나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규제가 있으면 수입업체나 외국기업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수입품이나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덜 차별적인 규제의 수정이나 규제대체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일관성은 사회적 목적을 유지하되 더욱 효율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 또는 규제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게 모두 이득을 가져다주는 윈-윈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내 모든 건설업체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등급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게만 입찰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GATS협정이나 한중FTA에 따르면 중국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업체는 대부분의 경우 국내업체와 같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등급이 다른 두 업체들이 합작을 하는 경우, 두 회사 중 낮은 등급을 가진 회사의 등급에 따라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결정된다. 건설업체의 등급을 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건설업체가 일정 숫자 이상의 전문가들이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건인데, 한국 건설업체들은 중국업체들보다 수주가 적고 현지 자본이 작으므로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숫자의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규제일관성 조치가 도입되면, 이러한 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합작회사 중 높은 수준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등 다른 규제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물론 규제일관성이 도입된다하여도 중국정부가 이러한 대체규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같이 아무 방법이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¹⁸⁾.

규제개혁과 규제일관성을 국제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국내적 정책과제이며,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아 일부 관계자들은 국제협정을 통하여 규제개혁 절차와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¹⁹⁾. 또한 Kelsey(2011)은 TPP협정 중간본의 규제일관성 내용을 검토하면서 규제개혁과 규제일관성에 관련된 내용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강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정부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무리한 부담을 부여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TPP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을 보면 규제일관성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강요성이 약하며, 기본개념과 협정의 문구는

18) 중국 건설시장 개방에 관련된 내용은 양준석(2015) 참조.

19) 도하라운드의 뉴이슈 과제의 논의 중 정부조달투명성(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에서 일부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이들은 시장개방을 하지 않은 정부조달 분야에 서마져 WTO가 일정한 투명성 절차를 강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정부조달투명성을 도하라운드에 포함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끝에서 이 과제는 도하라운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준석·김홍률(2001) p.76 참조.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모든 TPP 가입국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문구 및 이와 관련된 APEC 자료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TPP협정의 규제일관성과 관련된 부담은 가입국에게 그다지 큰 부담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GATS협정은 이미 국내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으며, TPP 협정의 25.2조의 2b항에서 각 국가는 자기에게 맞는 정책 목표와 이를 실현할 규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각 국가의 정책적 주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European Union(2013)과 US Chamber of Commerce(2015)에서 보듯이 각 국가는 자기가 필요한 규제를 도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는 규제일관성의 주 목표가 규제수렴이 아니라 규제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규제개혁을 통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제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TPP 가입국이 아니지만, 곧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규제일관성과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장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검토해 본다.

VI. 한국의 규제개혁체제와 규제일관성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OECD의 권장사항을 따라 국내 규제개혁 체제를 개선하였으며, 규제개혁과 관련, 2000년과 2007년 OECD의 검토를 받았는데, 당시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APEC에서 규제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규제일관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중 상당부분을 이미 도입하였다. 다만,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국내제도가 다소 취약한데, 여기서는 TPP 협정에서 제시한 규제일관성 제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제도를 평가해 본다.

한국은 규제정책을 관리하고 규제의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나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를 검토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부대표들과 민간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대표들은 학자, NGO 대표, 기업대표 및 사회적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으로 실무적 지원은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신설 규제의 검토 및 개혁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TPP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

회의 검토를 받고, 규제영향분석을 받게 되어 있다. <표 4>는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의 입법과정을 설명한다. 국무회의, 즉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나 규제안에 대해서 한국은 부패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으로 40-60일 소요되는데, 이 때 이해관계자들은 담당부처에 각종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수입업체들도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은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예 및 준비기간을 두는 이유는 하위법령이나 규제를 마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또한 국민이나 피규제자가 새로운 법령, 규제 및 의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²⁰⁾, 법에는 발효일자가 일반적으로 따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출하는 신설 법이나 규제, 개정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TPP의 규제일관성 챗터에서 예상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표 4> 정부입법절차

단계	입법과정	소요기간(일)
1	법령안의 입안	30-60
2	부패영향평가	15-30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30-60
4	입법예고	40-60
5	규제심사	15-20
6	법제처 심사	20-30
7	차관회의 심의	7-10
8	국무회의 심의	5
9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7-10
10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	30-60
11	국무회의 상정	5
12	공포	3-4

자료 : 법제처 웹사이트.

20) 법률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edu.klaw.go.kr/StdInfnfoR.do;jsessionid=Lz2VaRCf8y0SjgbY8V9UXQd83Dmf1wsDjWhFDXoFP7lqCpgOLkZYjBxSTe85YwA?astSeq=85&astClsCd=700101> (마지막 확인 2015.11.5)

그러나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법과 여기에 따르는 규제, 또는 지방정부가 도입하는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원칙을 빌미로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부패영향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을 받을 의무가 없고, 코멘트 기간이나 공표 후 준비기간을 부여할 의무도 없고 TPP 협정의 규제일관성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상정 법안도 <표 4>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도입할지는 미지수이다. 차선책으로 적용대상규제의 범위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안과 관련 규제는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당히 넓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한 법과 규제를 협정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면 여타 가입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가 도입하는 법과 규제도 현재로는 부패영향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 심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지방정부가 도입하는 법과 규제에도 규제 심사를 요구하는 법안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규제의 검토에도 TPP 협정의 합치성과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의 검토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기존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아직 책임기관이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기존 규제의 검토 및 개선의 책임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있었고,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기존 규제 검토 책임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일부 과거 정권은 당시 정치적 환경에 따라 기존 규제 검토의 책임을 규제개혁추진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기관에도 부여하였다²¹⁾.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과 권위가 다소 약화된 면이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규제 검토의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 규제일관성 챕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VII. 결론

세계 통상환경은 양자FTA의 단계를 넘어 메가FTA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가

21) 이혁우(2012).

장 규모가 큰 메가FTA 중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맺은 TPP협정과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하고 있는 TTIP협정에서는 통상협정으로는 처음으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가 협정에 추가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고, 국내정책목표의 실현, 국제무역과 투자의 장려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간 규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규제의 효율성과 규제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러한 제도에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등 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도입된 법이나 규제가 수입품이나 수입서비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일관성에 대한 내용은 TPP 협정에서 통상협정으로는 처음으로 등장하였지만, 그 내용은 OECD와 APEC에서 이미 20년 이상 논의되었으며, 규제일관성의 일부인 규제투명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WTO의 TBT, SPS,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된 바가 있다.

2015년 11월 발표된 TPP협정의 규제일관성 챕터의 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 중 기존 OECD, APEC 및 WTO 협정에서 논의되거나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으며,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TPP협정에서 규제일관성은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97년부터 실시한 규제개혁으로 규제일관성 챕터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방정부 법이나 규제, 국회의원이 상정하는 법이나 규제는 규제일관성에서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면이 있다.

TPP 협정과 TTIP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볼 때 규제일관성은 규제수렴(regulatory convergence)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규제일관성은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 및 기존 규제의 검토, 규제대체수단의 고려,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상의 및 새 규제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의 부여 등을 요구하는 반면, 규제수렴은 여러 국가들의 법이나 규제가 최대한 같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데, 규제수렴은 규제일관성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일부 규제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일관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개념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5년 10월까지 정부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기관들은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그릇된 번역을 빨리 수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혁우(201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pp. 3-38.
- 양준석(2006), “WTO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 양준석(2015),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지」, 제16권 제6호, pp. 92-100.
- 양준석·김홍률(2001),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PEC(2011), “2011 Leaders’ Declaration”, (Nov. 12, 2011) Available from http://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1/2011_aelm.aspx
- APEC-OECD(2005),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Retrieved Oct. 20, 2015, from <http://www.oecd.org/regreform/34989455.pdf>
- Bollyky, T. J.(2012), “Regulatory Coherence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alks,” C.L. Lim, D. Elms, P. Low (Ed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Quest for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1-186. Retrieved Oct. 20, 2015 from <http://ssrn.com/abstract=2327160>
- European Union(2013), “TTIP: Cross-cutting disciplines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Position paper –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Dec. 16, 2015,) Available at <http://www.bilaterals.org/?eu-us-fta-regulatory-coherence&lang=en>
- Fontagné, L. and Jean, S.(2014), “TTIP is About Regulatory Coherence” VoxEU, (No v. 16, 2014) Available at <http://www.voxeu.org/article/ttip-about-regulatory-coherence>
- Kelsey, Jane(2011), “Preliminary Analysis of the Draft TPP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Oct. 23, 2011) Available at http://www.citizenstrade.org/ctc/wp-content/uploads/2011/10/TransPacific_RegCoherenceMemo.pdf
- OECD(1997a),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Vol. 1: Sectoral Reports*, Paris: OECD
- OECD(1997b),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Vol. 2: Thematic Reports*, Paris: OECD
- OECD(1997c),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Retrieved on Oct. 30,

2015 from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2391768.pdf>
OECD(2000), "Trade and Regulatory Reform: Insights from the OECD Country Reviews and Other Analyses" TD/TC/WP(2000)21/Final
OECD(2001), "Flagship Report on Regulatory Quality" PUMA/REG(2001)1,
OECD(2007) *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Paris: OECD
US Chamber of Commerce(2015), "Regulatory Coherence & Cooperation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Feb. 27, 2015), Available from https://www.uschamber.com/sites/default/files/regulatory_coherence_regulatory_cooperation_chamber_ttip_paper_-_final_3-02.pdf

Analysis of Regulatory Coherence in the TPP

Jun-sok Yang

Abstrac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nd Trans-Atlantic Trade and Partnership Agreement introduce "regulatory coherence." Regulatory coherence refers to "the use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the process of planning, designing, issu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regulatory measures in order to facilitate achievement of domestic policy objectives, and in efforts across governments to enhance regulatory cooperation in order to further those objectives an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is paper traces ideas dealing with regulatory reform and regulatory transparency as discussed in OECD, APEC and selected WTO agreements, examines the text of the regulatory coherence chapter of TPP and TTIP, then examines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of Korea to see whether Korea satisfies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regulatory coherence chapter of TPP.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system most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TPP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but some additional procedural reforms are needed for law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men, and regional laws proposed by regional governments. Finally, the paper no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is-translating regulatory coherence as regulatory convergence, which is a separate idea, and the government should correct its error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FTA, Regulatory Coherence, Regulatory Reform, Nontariff Barriers